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정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43

발의연월일: 2020. 7. 16.

발 의 자:유정주·안민석·고영인

서동용 • 김병욱 • 임오경

신동근 · 박재호 · 이상헌

김철민 · 김민석 · 양향자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성이제기되고 있음.

수십 년에 걸쳐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정부의 적극적 대응부족과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조치가 미비했기 때문임.

이에 이 법의 목적으로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명시하고,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원칙의 명문화 및 임 시보호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조, 제3조, 제18조의3, 제18조의4 및 제22조). 법률 제 호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함양하여"를 "함양 및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여"로, "생활을 영위하게 하며,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"을 "생활의 영위"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중 "권장"을 "권장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국민체육 진흥"을 "국민체육 진흥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제18조의3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
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3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실태조사"를 "실태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, 법률 지원, 임시보호 및

연계

⑤ 스포츠윤리센터가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한다. 다만,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스포츠 윤리센터가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, 구상권행사의 절차・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4의 제목 "(고발 및 징계요구)"를 "(조치 및 고발·징계요구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2항"을 "제3항"으로 한다.

① 지방자치단체와 스포츠윤리센터는 성폭행 및 폭행, 협박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자 및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시키고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22조제1항제11호의3 중 "피해자"를 "신고자ㆍ피해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민체육을 제1조(목적) -----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 -----함양 하고,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여-----하며,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 ----생활의 영위--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. 제3조(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) 국 제3조(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등)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(1) -----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체육 진흥 및 체육인의 인권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 ·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 다. <신 설>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제 18조의3에 따른 스포츠윤리센 터는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 하여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 진에 필요한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 다.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3(스포츠윤리센터의 설 제18조의3(스포츠윤리센터의 설

- 립) ①·② (생 략)
-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- 1. (생략)
- 2. 피해자에 대한 상담, 법률 지원 및 연계
- 3.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
- 4. 5. (생략)
- ④ (생략)

<신 설>

⑤ ~ ⑦ (생 략)

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|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4(고발 및 징계요구) 제18조의4(조치 및 고발ㆍ징계요 <신 설>

- 립) ① ② (현행과 같음)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 료 및 상담, 법률 지원, 임시 보호 및 연계
- -----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요구
- 4. 5. (현행과 같음)
- ④ (현행과 같음)
- ⑤ 스포츠윤리센터가 제3항제2 호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 한다. 다만, 신속한 지원을 위 하여 스포츠윤리센터가 부담하 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, 구상권행사의 절차 •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- ⑥ ~ ⑧ (현행 제5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)

일부개정법률

구) ① 지방자치단체와 스포츠

① · ② (생 략)

③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 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,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 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제22조(기금의 사용 등) ① 국민 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 용하고,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 계정은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 원회법」 제14조의4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.

1. ~ 11의2. (생 략) 11의3.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 력 예방 및 <u>피해자</u> 지원

12. (생략)

윤리센터는 성폭행 및 폭행, 협
박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
고자 및 피해자를 가해자로부
터 분리시키고 신고자 및 피해
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
여야 한다.
$\underline{2} \cdot \underline{3}$ (현행 제 1 항 및 제 2 항
과 같음)
<u>4</u>
<u>제3항</u>
제22조(기금의 사용 등) ①
1. ~ 11의2. (현행과 같음)
11의3
<u>신고자 · 피해자</u>
12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생 략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